



의안번호	제 2019 - 16호
보 고 연 월 일	2019. 6. 10. (제95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 I. 제125차 전체 회의 1
 - 1. 일시·장소 1
 - 2. 참석자 1
 - 3. 주요 안건 1

- II. 논의 결과 2
 - 1. 개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2
 - 2. 개별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8
 - 3. 양형기준 해설 수정 12
 - 4.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14
 - 5. 추진 일정 15

- III. 향후 일정 17
 - 1. 연구반 회의 17
 - 2. 전체 회의 17

【별첨】

- 최승원, “제7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 검토”
- 김찬중, 차호동, “2019년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제안”
- 권상진, “제7기 양형위 양형기준 설정범죄[균형법범] 대상 검토”

I. 제125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9. 5. 20.(월) 15:30 ~ 18: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전문위원(11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권상진, 김찬중, 김혜경, 김호용, 김희연, 차호동, 최승원,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범현, 이진국 전문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 간사 : 운영지원단장

3. 주요 안건

- 제7기 추진 업무(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등) 검토

II. 논의 결과

1. 개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가. 고려 사항

- 2007. 1. 26. 법률 제8270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부칙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제8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 외 제1~6기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 설정의 실무상 필요성(양형이 특히 어려운 유형의 범죄, 실무에서 양형기준에 대한 설정 요청이 있는 범죄 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

나. 설정 대상 포함에 의견이 일치된 범죄군 : 디지털 성범죄¹⁾

- 대상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
 - ☞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 범죄의 구체적 내역은 추후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보고 예정
-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
 - 최근 이른바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음

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은 ① 별도의 개별적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과 ② 기존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전문위원단에서는 추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 그 설정 방식을 검토할 예정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다음부터 ‘성폭력처벌법’으로 약칭)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구공판사건이 2006년~2008년 192건(연 평균 64건)이었으나 2009년~2018년 8,833건(연 평균 883건)으로 급증
- 제6기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 설정의 시급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제7기 양형위원회의 설정 대상범죄로 우선적으로 검토함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음
- 2019. 6. 3.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도 가졌음

다. 설정 대상 포함 여부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범죄군

(1) 1순위 : 주거침입범죄²⁾

○ 다수 의견(7인) : 포함

- 구공판 사건이 2006년~2008년 1,045건(연 평균 348건)에서 2009년~2018년 6,826건(연 평균 682건)으로 증가
-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의 형량 자체가 높지는 않은 편이나 징역형 선고비율이 높고(2009~2018년 72.9%), 단일범으로 기소되는 건수 역시 적지 않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임. 따라서 양형기준이 설정되면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보다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됨

○ 소수 의견(4인) : 제외

- 실무상 주거침입범죄만을 단독으로 구공판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높지 않음

2) 주거침입, 퇴거불응, 공동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 주거·신체수색죄 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경합범으로 기소되더라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하한은 따라야 함. 따라서 양형기준 설정 여부가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음

[주거침입범죄 관련 참고 통계]3)

■ 단일범으로 기소되어 선고된 내역

단위: 명, %

사건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실형	집행유예	전체	실형	집행유예	전체	실형	집행유예	전체	실형	집행유예	전체	실형	집행유예	전체	실형	집행유예	전체
건조물수색	수	-	-	-	-	-	-	-	-	-	1	1	2	0	2	2	1	3	4
	비율	-	-	-	-	-	-	-	-	-	50.0	50.0	100.0	0.0	100.0	100.0	25.0	75.0	100.0
건조물침입	수	3	6	9	1	6	7	3	5	8	11	20	31	6	12	18	24	49	73
	비율	33.3	66.7	100.0	14.3	85.7	100.0	37.5	62.5	100.0	35.5	64.5	100.0	33.3	66.7	100.0	32.9	67.1	100.0
방실침입	수	-	-	-	-	-	-	0	4	4	2	3	5	1	3	4	3	10	13
	비율	-	-	-	-	-	-	0.0	100.0	100.0	40.0	60.0	100.0	25.0	75.0	100.0	23.1	76.9	100.0
방실침입미수	수	1	0	1	-	-	-	-	-	-	-	-	-	-	-	-	1	0	1
	비율	100.0	0.0	100.0	-	-	-	-	-	-	-	-	-	-	-	-	100.0	0.0	100.0
자동차수색	수	1	0	1	0	1	1	0	1	1	0	1	1	0	1	1	1	4	5
	비율	100.0	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20.0	80.0	100.0
주거침입	수	19	37	56	19	34	53	14	36	50	23	59	82	22	41	63	97	207	304
	비율	33.9	66.1	100.0	35.8	64.2	100.0	28.0	72.0	100.0	28.0	72.0	100.0	34.9	65.1	100.0	31.9	68.1	100.0
주거침입미수	수	1	0	1	-	-	-	0	1	1	0	5	5	1	0	1	2	6	8
	비율	100.0	0.0	100.0	-	-	-	0.0	100.0	100.0	0.0	100.0	100.0	100.0	0.0	100.0	25.0	75.0	100.0
퇴거불응	수	0	3	3	0	1	1	0	3	3	1	9	10	3	8	11	4	24	28
	비율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10.0	90.0	100.0	27.3	72.7	100.0	14.3	85.7	100.0
특수건조물 침입	수	-	-	-	-	-	-	0	1	1	0	5	5	0	5	5	0	11	11
	비율	-	-	-	-	-	-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특수주거침입	수	-	-	-	-	-	-	0	8	8	0	12	12	1	4	5	1	24	25
	비율	-	-	-	-	-	-	0.0	100.0	100.0	0.0	100.0	100.0	20.0	80.0	100.0	4.0	96.0	100.0

3) 단일범 기소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전체회의 중 운영지원단에 요청한 통계자료임. 주무 전문위원의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함.

단위: 명, %

사건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실형	집행유예	전체	실형	집행유예	전체	실형	집행유예	전체	실형	집행유예	전체	실형	집행유예	전체	실형	집행유예	전체
특수주거침입 미수	수	-	-	-	-	-	-	-	-	-	0	2	2	0	1	1	0	3	3
	비율	-	-	-	-	-	-	-	-	-	0.0	10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폭력행위처벌 법위반(공동주 거침입)	수	1	7	8	1	3	4	2	6	8	0	13	13	0	3	3	4	32	36
	비율	12.5	87.5	100.0	25.0	75.0	100.0	25.0	75.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11.1	88.9	100.0
폭력행위처벌 법위반(공동주 거침입)교사	수	0	1	1	-	-	-	-	-	-	-	-	-	-	-	-	0	1	1
	비율	0.0	100.0	100.0	-	-	-	-	-	-	-	-	-	-	-	-	0.0	100.0	100.0
폭력행위처벌 법위반(공동퇴 거불응)	수	-	-	-	0	5	5	1	0	1	0	1	1	0	2	2	1	8	9
	비율	-	-	-	0.0	100.0	100.0	100.0	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11.1	88.9	100.0
폭력행위처벌 법위반(상습주 거침입)	수	3	0	3	2	0	2	-	-	-	1	0	1	-	-	-	6	0	6
	비율	100.0	0.0	100.0	100.0	0.0	100.0	-	-	-	100.0	0.0	100.0	-	-	-	100.0	0.0	100.0
폭력행위처벌 법위반(집단·흥 기등주거침입)	수	2	11	13	0	10	10	0	6	6	-	-	-	-	-	-	2	27	29
	비율	15.4	84.6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	-	-	-	-	-	6.9	93.1	100.0
폭력행위처벌 법위반(집단·흥 기등주거침입) 교사	수	-	-	-	1	0	1	-	-	-	-	-	-	-	-	-	1	0	1
	비율	-	-	-	100.0	0.0	100.0	-	-	-	-	-	-	-	-	-	100.0	0.0	100.0
전체	수	31	65	96	24	60	84	20	71	91	39	131	170	34	82	116	148	409	557
	비율	32.3	67.7	100.0	28.6	71.4	100.0	22.0	78.0	100.0	22.9	77.1	100.0	29.3	70.7	100.0	26.6	73.4	100.0

(2) 2순위 : 병역법위반범죄⁴⁾

○ 다수 의견(7인) : 제외

- 양형편차나 양형의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거나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요청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2018년 선고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의 추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소수 의견(4인) : 포함

-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많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높

4)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도망·신체손상, 징병검사 기피, 입영 기피, 공익근무요원 대리복무,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 허위증명서 발급, 전문연구요원 등 편입 및 종사의무 위반,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고용금지 및 복지보장 위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등.

음 편에 속하는 범죄군임

- 양형기준 설정을 통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등에 따라 병역에 관하여 생긴 다소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음

(3) 공동 3순위 : 출입국관리법위반범죄⁵⁾

○ 다수 의견(8인) : 제외

- 대부분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징역형 선고비율이 높기는 하나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강제추방되는 사건으로 보임
- 양형편차나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거나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요청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소수 의견(3인) : 포함

- 징역형 선고비율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에 해당함

(4) 공동 3순위 : 군사기밀보호법위반범죄⁶⁾

○ 다수 의견(8인) : 제외

- 실제 선고 건수가 너무 적어서(1년에 1~2건 정도)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경험적 자료가 매우 부족함
- 양형편차나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거나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요청이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려움

○ 소수 의견(3인) : 포함

- 방산비리 사건에 대하여 보다 더 엄중한 양형 필요
- 실제 선고사례가 많지 않을수록 실무자의 입장에서 양형기준을 더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규범적 평가를 거쳐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 거짓사증을 신청, 체류자격, 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나 체류,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 알선, 권유 등.

6) 군사기밀 탐지·수집, 군사기밀 누설, 군사기밀 불법거래 등.

(5) 공동 3순위 : 불법집단행동범죄⁷⁾

○ 다수 의견(8인) : 제외

-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의 경우 대부분 법정형이 징역 2년 이하에 해당하고 선고형의 분포 폭도 넓지 않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범죄의 경우 발생빈도가 매우 낮음. 업무방해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되므로 별도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소수 의견(3인) : 포함

-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군에 해당함

라. 설정 대상 불포함에 의견이 일치된 범죄군

○ 이하 범죄들은 사건 발생빈도, 범죄의 중요성, 국민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벌금형 선고비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제7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하지 않 하도 무방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됨 ☞ 상세한 내용은 주무 전문위원(최승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 환경범죄, 공연음란범죄, 관세법위반범죄, 정치자금법위반범죄, 자동차관리법위반범죄, 산지관리법위반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범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공정거래법위반범죄, 국가보안법위반범죄, 자금세탁범죄 등

7) 집회 또는 시위방해, 금지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 주최,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 금지 시간 또는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주최·참가,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쟁의행위 등.

2. 개별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가. 수정 대상 포함에 의견이 일치된 범죄군

(1) 교통범죄⁸⁾

-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국민적 관심 역시 높아 조속한 양형기준 수정이 필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특정범죄가중법’으로 약칭) 제5조의11이 2018. 12. 18. 개정·시행되어 ①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② 위험운전치상죄가 ‘10년 이하 징역(또는 5백만 원~3천만 원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2018. 12. 24. 개정되어(2019. 6. 25. 시행) ①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고(중전 3진 아웃 → 2진 아웃), ② 처벌 대상인 음주기준이 강화(중전 혈중알콜농도 0.05% → 0.03%)되면서 법정형이 높아짐
- 제6기 양형위원회는 법률 개정의 취지와 2018. 12. 10. 열린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결과를 고려하여 교통범죄를 제7기 양형위원회의 최우선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음

(2) 선거범죄

- 선거범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후 3차례(2014. 2. 13.과 2014. 5. 14. 및 2015. 12. 24.)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양형기

8) 양형기준의 수정 범위는 추후 양형기준 수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보고 예정

준이 설정된 일부 선거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이 높아짐

- 공직선거법 제252조 1항, 제96조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높아졌고, 나머지 개정 조항은 벌금형이 높아짐(벌금형의 하한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벌금형의 상한이 2~3배 상향)
- 개정 조항이 다수 존재하여 기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실무적으로도 개정의 필요성이 높음
- 2020년 국회의원 선거(2020. 4. 15.)를 앞두고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속한 양형기준 수정이 필요

(3) 마약범죄

- 논거는 상반되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함
 - ① 권고 형량범위의 상향 조정 필요성
 - 최근 잇달아 불거진 마약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마약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
 - 마약 범죄는 국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도 현행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은 지나치게 낮아 마약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가 높지 않음
 - ② 권고 형량범위의 하향 조정 필요성
 - 대량범(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됨)의 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가 2016. 1. 6. 개정·시행되어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낮아짐
 - 대량범의 경우 실무에서 권고 형량범위를 하향 이탈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양형기준과 양형실무의 괴리가 큼

(4) 균형법상 성범죄⁹⁾

- 친고죄 폐지 이후인 2014년도부터 군사법원에서 신고하는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에 해당하고 국민적 관심 역시 높음
 -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 최근 6년간 618건(연 평균 103건 발생) 신고됨
- 균형법상 성범죄는 행위태양이 동일해도 지휘관계 여부, 신분별, 군기강에 저해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양형편차가 심한 범죄에 해당

(5) 강도범죄

- 2016. 1. 6. 특정범죄가중법이 개정·시행됨
 - 상습강도 등(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3항)이 삭제됨
 - 누범강도 등(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법정형이 변경됨
- 개정 법률 시행 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로 양형기준 수정 필요

나. 수정 대상 포함 여부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범죄군

(1) 지식재산권범죄(기술유출범죄)

- 다수 의견(8인) : 제외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은 2012. 6. 18. 최초 설정
 - 관련 법률의 개정(2016. 6. 30. 개정·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은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제36조 제1항은 '징역 10년

9) 군인등강간, 군인등유사강간, 군인등준강간,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준강제추행, 군인등강간상해/치상, 군인등강제추행상해/치상, 군인등강간치사, 군인등강제추행치사 등.

이하'에서 '징역 15년 이하'로 각각 상향됨)을 반영하여 2017. 4. 10. 수정 의결되어 2017. 5. 15.부터 시행되고 있음

[수정된 내용]

- ①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을 국내침해 유형은 '징역 3년' 에서 '징역 4년' 으로, 국외침해 유형은 '징역 5년' 에서 '징역 6년' 으로 상향
- ②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을 국내침해 유형은 '징역 1년 6월' 에서 '징역 2년' 으로, 국외침해 유형은 '징역 3년' 에서 '징역 3년 6월' 로 상향
- ③ 특별가중인자인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을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으로 수정
⇒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이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특별가중인자를 추가한 수정된 양형기준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 양형기준 수정 후 법정형 변경 등 양형기준의 추가 수정이 필요한 사정이 생기지 않음

○ 소수 의견(3인) : 포함

- 최근 10여년 간 기술유출 범죄의 피해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연간 피해액은 50조 원에 이르는 수준임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주요 피해 대상이며, 국가경제 및 국가안보에 끼치는 해악이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형량으로 인해 거액을 받고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의 유인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
- 양형기준 설정 이후에도 국내 및 국외유출의 합산 평균형량은 징역 9.7월(2013년 7월~2017년)로 하향하는 추세이고 실행 선고 시에도 형이 낮음

- 현행 양형기준이 법정형(산업기술 해외유출 징역 15년↓, 국내유출 징역 7년↓)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국가 핵심기술 유출의 경우 별도 양형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 양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기술유출범죄를 억제하여야 함

(2) 식품보건범죄

○ 다수 의견(8인) : 제외

-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양형기준 수정이 시급하지 않음
- 처벌 조항의 경우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 소수 의견(3인) : 포함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법조문이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 수정 필요

다. 수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의견이 일치된 범죄군

- 이하 범죄들은 양형기준 수정이 시급하지 않아 제7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됨 ☞ 상세한 내용은 주무 전문위원(최승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 절도범죄, 증권·금융범죄, 방화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등

3. 양형기준 해설 수정 ⇨ 포함(의견 일치)

- 제1기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의 적용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

지침으로서 전문위원단, 양형위원회 소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양형기준 해설’을 확정함 ☞ 매년 발간되는 ‘양형기준’ 책자에 포함되어 있음

- 지난 10년 동안 양형기준이 시행되면서 양형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구체적인 양형기준 적용 방법에 관하여 여러 문의가 있었음. 또 양형기준 해설 중 지나치게 어렵게 서술되거나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도 존재함
-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반영하고, 적절한 사례를 가미하는 등 양형기준 해설을 보다 더 쉽고 명확하게 수정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성 존재
- 양형기준 해설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 작업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음
- ① ‘전문위원 운영방침’ 제7조에 따라 수석전문위원과 4인의 전문위원(교수 2인, 법관 1인, 검사 1인)으로 연구반(간사 : 운영지원단장)을 구성하여 연구반에서 양형기준 해설 수정 초안 작성

■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운영방침 제7조

수석전문위원은 총괄팀 또는 전체회의를 거쳐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할 3인 이상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전문위원단 전체회의에서 연구반이 작성한 양형기준 해설 수정 초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여 양형기준 해설 수정안 마련
- ③ 전문위원단의 양형기준 해설 수정안을 양형위원회에 보고

4. '합의' 관련 양형요소¹⁰⁾ 정비

- 2018. 7. 16. 열린 양형연구회 제1차 심포지엄에서 합의 관련 양형 요소의 통일적인 규율을 위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
- 2019. 1. 14. 열린 양형위원회 제92차 정기회의에서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위반범죄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관련 양형요소를 심의하면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전반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정합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음
- 현행 양형기준상 합의와 관련한 양형요소는(정의규정 내용 반영),
① 처벌불원 ② 처벌불원 및 상당한 보상 ③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합의에 준하는 상당액 공탁 ④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⑤ 상당 부분 피해회복 ⑥ 상당금액 공탁 ⑦ 일부 피해회복 등으로 다양하고, 그 질적 구분(예를 들어 특별 감경인자 v. 일반 감경인자)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형량범위와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된 모든 범죄군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체계적·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높음

10) 선고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양형인자뿐 아니라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포함한 것임.

5. 추진 일정

구분	상반기	하반기
① 개별 양형기준 설정		
제1 범죄(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	
제2 범죄 양형기준 설정		○
② 개별 양형기준 수정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		○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추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방식에 따라 추진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¹¹⁾	
③ 양형기준 해설 수정	○	
④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

※ 개별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 제2 범죄로, ① 주거침입범죄(7인), ② 병역법위반범죄(4인), ③ 군사기밀보호법위반범죄(3인) / 불법집단행동범죄(3인) / 출입국관리법위반범죄(3인)가 제안됨

※ 개별 양형기준 수정 대상에 포함시킬 지에 대하여 ① 지적재산권범죄 중 기술유출범죄(찬성 3인, 반대 8인), ② 식품·보건범죄(찬성 3인, 반대 8인)의 경우 의견이 나뉨.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위원들은 수정 시기에 대하여 ① 지적재산권범죄 중 기술유출범죄는 상반기를, ② 식품·보건범죄는 하반기를 제안함

11)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을 별도의 개별적 양형기준 설정 방식으로 할 경우 하반기가, 기존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방식으로 할 경우 상반기가 적절함.

※ 참고자료(운영지원단 작성 일정안)

전문위원회의	양형위원회의	안건
19.6.3.	양형연구회 3차 심포지엄	
19.5.20. (125차)	19.6.10. (95차)	7기 수정 및 설정범죄 선정
19.8.26. (126차)	19.9.9. (96차)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 / (군형법 성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 적용범위, 유형 분류 -
19.9.30. (127차)	19.10.25.(금) (97차)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 / (군형법 성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 형량범위 -
19.11.18.	양형연구회 4차 심포지엄	
19.11.11. (128차)	19.12.9. (98차)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 / (군형법 성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 양형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
19.12.23. (129차)	20.1.6. (99차)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 / (군형법 성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양형기준 해설 수정안 확정
20.2.10.	공청회(디지털성범죄, 교통범죄)	
20.3.2. (130차)	20.3.16. (100차)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 (군형법 성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20.4.13.	20.4.27.	마약범죄,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 적용범위, 유형 분류 -
20.5.18.	양형연구회 5차 심포지엄	
20.5.11.	20.5.25.	마약범죄,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
20.6.15.	20.6.29.	마약범죄,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20.8.24.	20.9.7.	마약범죄,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최종 의결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 적용 범위, 유형 분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수정안 심의(1)

20.10.5.	20.10.23.(금) 워크숍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 형량범위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수정안 심의(2)
20.11.23.	양형연구회 6차 심포지엄	
20.11.9.	20.12.7.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 양형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수정안 심의(3)
20.12.21.	21.1.11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확정 합의 관련 양형요소 수정안 확정
21.2.8.	공청회(주거침입범죄, 합의 관련 양형요소 수정)	
21.3.15	21.3.29.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합의 관련 양형요소 수정안 최종 의결

III. 향후 일정

1. 연구반 회의

- 안건 : 양형기준 해설 수정
- 일시 : 2019년 6월 하순경 또는 7월 초순경
- 장소 : 미정

2. 전체 회의

- 안건 : 제7기 양형위원회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 일시 : 2019. 8. 26.(월) 15: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